|  |  |  |
| --- | --- | --- |
| **재정부, 세무총국의 개인이 유관 수입을 취득할 때 개인소득세 과세소득항목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74호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을 관철시켜 실행하고, 정책과 연관된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이 취득한 유관 수입을 개인소득세 과세소득항목에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개인이 단위 또는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은 ‘우발 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한다.  2. 부동산권 소유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 받아 취득한 수증 수입은 ‘우발 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의 개인소득세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78호) 제1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상황에 부합될 경우, 당사자 쌍방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1 부동산권 소유인이 부동산권을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2.2 부동산권 소유인이 부동산을 본인에게 직접적인 부양 또는 봉양의무를 부담하는 부양인 또는 봉양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2.3 부동산권 소유인이 사망하여, 법에 의해 부동산권을 취득한 법정상속인, 유언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기 조항에서 칭하는 수증 수입의 과세소득액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의 개인소득세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78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3. 기업이 업무 선전, 광고 등 활동을 하면서 무작위로 본 단위 이외의 개인에게 선물을 증정하거나(온라인 홍빠오(红包), 번역자 주: 중국에서 용돈, 세뱃돈을 의미 하동), 기업이 연회, 간담회, 축제 및 기타 활동 중 본 단위 이외의 개인에게 선물을 증정할 경우, 개인 취득한 선물 수입은 ‘우발 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한다. 단, 기업이 증정한 가격 할인 혹은 에누리 성격을 띄는 소비권, 상품권, 쿠폰, 할인권 등 선물은 제외한다.  상기 조항에서 칭하는 선물 수입의 과세소득액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판촉 전개로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의 개인소득세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1]50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4. 개인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감회의 개인 세수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시범시행 전개에 관한 통지>(재세[2018]22호)의 규정에 따라 수령한 세수 이연형 상업양로보험의 양로금 수입 중 25%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나머지 75% 부분은 10% 비율 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한다. 세금은 ‘월급, 급여소득’ 항목에 계상하고, 보험기구에서 원천징수한 후 개인이 세수 이연형 양로보험을 가입한 기구 소재지에서 전체 인원의 전체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처리한다.  5. 본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동시에 아래의 문건 또는 문건의 조항은 폐지한다.  5.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은행부문이 국가 이율을 초과하여 예금자에게 지급한 예금 유치 장려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회답>(재세자[1995]64호)  5.2 <국가세무총국의 중국 과학원 원사의 영예 장려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회답>(국세함[1995]351호)  5.3 <국가세무총국의 미분배 투자자 수익과 개인 생명보험 수입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회답>(국세함[1998]546호) 제2조  5.4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유관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1999]58호) 제3조  5.5 <국가세무총국의 주식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취득한 수입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회답>(국세함[1999]627호)  5.6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유관 문제에 관한 회답>(재세[2005]94호) 제2조  5.7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이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로 취득한 계약 위약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회답>(국세함[2006]865호)  5.8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의 개인소득세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78호) 제3조  5.9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판촉 전개로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의 개인소득세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1]50호) 제2조 제1항 및 제2항  5.10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감회의 개인 세수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시범시행 전개에 관한 통지>(재세[2018]22호) 제1조 제2항 제3점 2번째 단락  5.11 <국가세무총국의 개인 세수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시범시행 전개 유관 징수관리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21호) 제2조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9년 6월 13일 |  | 财政部、税务总局  **关于个人取得有关收入适用个人所得税**  **应税所得项目的公告**  财政部、税务总局公告2019年第74号  为贯彻落实修改后的《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做好政策衔接工作，现将个人取得的有关收入适用个人所得税应税所得项目的事项公告如下：  　　一、个人为单位或他人提供担保获得收入，按照“偶然所得”项目计算缴纳个人所得税。  二、房屋产权所有人将房屋产权无偿赠与他人的，受赠人因无偿受赠房屋取得的受赠收入，按照“偶然所得”项目计算缴纳个人所得税。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无偿受赠房屋有关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财税〔2009〕78号）第一条规定，符合以下情形的，对当事双方不征收个人所得税：  　　（一）房屋产权所有人将房屋产权无偿赠与配偶、父母、子女、祖父母、外祖父母、孙子女、外孙子女、兄弟姐妹；  （二）房屋产权所有人将房屋产权无偿赠与对其承担直接抚养或者赡养义务的抚养人或者赡养人；  （三）房屋产权所有人死亡，依法取得房屋产权的法定继承人、遗嘱继承人或者受遗赠人。  前款所称受赠收入的应纳税所得额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无偿受赠房屋有关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财税〔2009〕78号）第四条规定计算。  三、企业在业务宣传、广告等活动中，随机向本单位以外的个人赠送礼品（包括网络红包，下同），以及企业在年会、座谈会、庆典以及其他活动中向本单位以外的个人赠送礼品，个人取得的礼品收入，按照“偶然所得”项目计算缴纳个人所得税，但企业赠送的具有价格折扣或折让性质的消费券、代金券、抵用券、优惠券等礼品除外。  前款所称礼品收入的应纳税所得额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促销展业赠送礼品有关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财税〔2011〕50号）第三条规定计算。  四、个人按照《财政部 税务总局 人力资源社会保障部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证监会关于开展个人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试点的通知》（财税〔2018〕22号）的规定，领取的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的养老金收入，其中25%部分予以免税，其余75%部分按照10%的比例税率计算缴纳个人所得税，税款计入“工资、薪金所得”项目，由保险机构代扣代缴后，在个人购买税延养老保险的机构所在地办理全员全额扣缴申报。  五、本公告自2019年1月1日起执行。下列文件或文件条款同时废止：  （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银行部门以超过国家利率支付给储户的揽储奖金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批复》（财税字〔1995〕64号）；  （二）《国家税务总局对中国科学院院士荣誉奖金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复函》（国税函〔1995〕351号）；  （三）《国家税务总局关于未分配的投资者收益和个人人寿保险收入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批复》（国税函〔1998〕546号）第二条；  （四）《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所得税有关政策问题的通知》（国税发〔1999〕58号）第三条；  （五）《国家税务总局关于股民从证券公司取得的回扣收入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批复》（国税函〔1999〕627号）；  （六）《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批复》（财税〔2005〕94号）第二条；  （七）《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取得解除商品房买卖合同违约金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批复》（国税函〔2006〕865号）；  （八）《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无偿受赠房屋有关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财税〔2009〕78号）第三条；  （九）《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促销展业赠送礼品有关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财税〔2011〕50号）第二条第1项、第2项；  （十）《财政部、税务总局、人力资源社会保障部、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证监会关于开展个人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试点的通知》（财税〔2018〕22号）第一条第（二）项第3点第二段；  （十一）《国家税务总局关于开展个人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试点有关征管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21号）第二条。  特此公告。  财政部  税务总局  2019年6月13日 |